
아주대학교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업지시서



2026. 4.

아주대학교 안전관리센터

가. 사업명 : 아주대학교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

나. 사업목적 :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(지정폐기물의 종류)에 따라, 교육 및 연구 과정에서 배출되는 실험 폐수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, 지정 폐기물로 수거 및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.

다. 계약기간 : 2026.6.1. - 2028.5.31. (2년간)

라. 계약자의 의무

- 1) 계약업체는 과업내용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, 기타 관련 법규와 수거 및 처리 작업상의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후 행정처분, 민사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- 2) 계약업체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3) 본교는 계약업체의 계약이행사항을 중간 평가하여 불합격 판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
마. 관리대상 : 아주대학교 실험실 지정폐기물 보관소 (2개소-화공실험실, 혜강관)

바. 처리대상 지정폐기물

- 1) 실험폐액 및 폐유
 - 실험과정 중 발생하는 산성, 알칼리성, 유기계, 무기계, 폐유등의 액상 및 고상 물질
- 2) 연구 검사용 폐시약
 - 각종 시약 (장기 미사용 시약, 조제시약 등 반응 또는 폭발이 우려되는 시약류)
 - 물반응성 물질, 인화성 고체, 제3류 위험물 (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), 알칼리 금속(예: 리튬, 나트륨, 칼륨 등) 및 해당 물질이 포함된 시약류
- 3) 유해화학물질 및 폐유독물질
 - 화학약품이 보관되었던 유리, 플라스틱 및 철재 용기 등의 빈시약병류
- 4) 기타고상
 -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펫, 샬레, 흡착제 등 지정폐기물이 묻은 실험자재 및 기구류 등
- 5) 폐수처리오니
 -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물 슬러지

사. 처리 발생량

(단위: Kg)

구분	폐수 처리 오니	폐유기용제		할로겐 유기용제	유해화학물질 (고상)	폐산	폐알칼리	연구, 검사용 폐시약		합계
		고상	액상					고상	액상	
'24-25년	100	26,160	71,160	37,540	230	5,030	310	1,300	1400	143,230

- 1) 최근 2년간 지정폐기물 발생량 합계
- 2) 지정폐기물 처리 발생량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, 지정폐기물 최종 처리량이 발생 예상량을 초과할 경우 동일 금액으로 지급한다.

2 과업 주요내용

가. 과업내용

- 1) 올바로시스템(국가폐기물 관리시스템)에 의한 수집대장 관리
- 2)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대행, 상차작업
- 3) 실험실 내 지정폐기물 수집, 운반 처리업무
- 4) 실험실 폐기물 분류작업 및 보관시설 청소
- 5) 기타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

나. 처리방법

- 1) “계약자”는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폐기물 수거 계획서
 - 폐기물 운반차량 및 비상연락망
 - 관할기관 신고서류
- 2) “계약자”는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서 폐액 용기를 월 1회 이상 직접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“발주자”의 요구가 생길 경우 공휴일에도 수거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.
- 3) “계약자”는 작업 후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고,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수급자가 반출, 처리할 것.
- 4) 모든 작업은 안전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발생 시 구두 및 유. 무선으로 즉시 보고할 것.

다.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관리

- 1) 폐기물 보관시설의 청소 및 건물상태 관리
- 2) 분리수거 용기(운반통, 마대등)의 구매, 보관
- 3) 폐기물 보관상태 점검 및 분류(주 1회)
- 4) 해강관, 약학관 지정폐기물 수집 및 운반

라. 행정사항

- 1) “계약자”는 지정폐기물(실험폐액)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- 2) “계약자”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“발주자”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, 이로 인한 “발주자”의 모든 손실에 대하여 “계약자”가 배상한다.
- 3) 실험실 폐기물 처리 후 계량증명서등을 발주처에 제공하며, 폐기물 처리 즉시 올바로 시스템에 해당 처리내역을 입력한다.
- 4) 올바로 시스템 미입력(지연 입력 포함)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.
- 5) 대금의 지불은 폐기물 처리 후 대관업무가 종료된 후 지급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 방법을 제시할 것.

3

안전관리

가. 관리사항

- 1) “계약자”는 본 계약의 수집·운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접한 제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손해가 발생할 시는 즉시 원형 및 그 기능을 복구해야 한다.
- 2) “계약자”는 지정폐기물(실험폐액) 수집·운반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(보안면, 보안경, 안전복, 안전장갑, 안전화 등)를 제공 및 착용하게 해야 한다.
- 3) “계약자”는 지정폐기물(실험폐액) 수집·운반 작업 중 작업자 또는 운반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대응(민·형사) 및 보상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.
- 4) “계약자”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처벌법」등에서 정한 안전·보건 확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.

4

입찰자격

※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·운반업(지정폐기물, 업종코드:1229)과 폐기물 중간처분업(지정폐기물, 업종코드:1254)을 등록한 업체로서 허가증에 과업 지시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.
 - 중간처분과 수집·운반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업체는 업종보완을 위한 공동 수급 형태(분담이행방식만 가능)로 가능함. (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)
 - 대표업체는 폐기물 수집·운반 업체 이어야 하고, 주된 계약자로 계약기간 발생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.
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학(교),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계약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.
-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지역인 업체

5

입찰방법

- 경쟁입찰에 의한 총액 최저가 업체선정 (항목별 처리예정량 × 단가에 대한 총 금액, 부가세 포함)
- 각 처리항목별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예정
-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응찰자 낙찰
-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최대 3회까지 투찰 실시
- 최대 3회 투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

6

문의처

가. 입찰 관련 : 구매관재팀 담당자(leenak0@ajou.ac.kr)

나. 과업 관련 : 안전관리센터 담당자(hyun0214@ajou.ac.kr)

[붙임1.] 지정폐기물 및 소모품 등 예상발생량

NO	품 명	규 격	단위	예상량	비 고
1. 위탁처리비					
가	폐수처리오니	일반소각	Kg	100	플라스틱 박스
나	폐유기용제(고상)	일반소각	Kg	26,160	종이박스, 유리병
다	폐유기용제(액상)	일반소각	Kg	71,160	PE통(20L)
라	할로겐 폐유기용제(액상)	고온소각	Kg	37,540	PE통(20L)
마	유해화학물질(고상)	고온소각	Kg	230	종이박스, 유리병
바	폐산(액상)	중화	Kg	5,030	PE통(20L)
사	폐알칼리(액상)	중화	Kg	310	PE통(20L)
아	연구검사용 폐시약(고상)	고온소각	Kg	1,300	유리병 등
자	연구검사용 폐시약(액상)	고온소각	Kg	1,400	PE통(20L)
2. 수거작업비		2인	회	24	
3. 운반비		10톤	회	24	
4. 소모품(운반통)		PE통(20L)	개	2,000	
5. 소모품(마대)			개	1,000	
6. 청소 및 관리비		1인, 주1회	회	96	

- 지정폐기물 발생량('24-25년) 2년을 합산한 기준으로 산출됨.
- 예상 발생량은 실제 발생량과 사정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.